

##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2.27.(수) 15:02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  
김석진 부위원장  
표철수 상임위원  
허 욱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고삼석 상임위원 (1인)

### 5. 회의내용

#### ① 성원보고

#### ② 국기에 대한 경례

#### ③ 개회선언

#### 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##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8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4건과 <보고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##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#### ⑦ 의결사항

**가.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9-09-38~41)**

- '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'에 대해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「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,
- (주)지바이크, (주)루트링크, (유)바른시큐리티, 콩테크(주) 등 4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**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9-09-042)**

- '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'에 대해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, “정보통신망법”) 개정(’18.9.18일 공포, ’19.3.19일 시행)에 따라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국내 대리인 의무 위반 및 국외 이전·재이전시 보호조치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,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, ③저장·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, ④법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하고,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과태료 부과
- 국외 이전·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1회 위반 시 1천만원, 2회 위반 시 2천만원, 3회 이상 위반 시 3천만원 등으로 규정

**다. 「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」 제정안에 관한 건 (2019-09-043)**

- '「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」 제정안에 관한 건'에 대해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서비스 가입 시 제공하는 경품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동 세부기준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세부기준 제정안 주요내용

- 경품을 많이 주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,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

## ⑧ 기 타

### 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하기로 함

## 6. 폐 회 (15:44)